

	<h2>지역간호사업소 운영 규정</h2>	문서번호	4-1-1		
		제정일	2001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1/3	관리 부서	지역간호 사업소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지역간호사업소(이하 “지역간호사업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.

**제2조(직무)** 본 지역간호사업소는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지역간호사업소의 1차 건강관리
  - 가. 내소자 중심 1차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및 추후관리를 한다.
  - 나. 건강사정 및 상담 사업을 한다.
  - 다.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.
  - 라. 지역사회 노인의 급·만성적인 건강요구를 사정하고 간호중재를 실시한다.
  - 마.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 및 방문간호를 실시한다.
2. 대학보건실
  - 가. 일과 중 학생, 교직원의 1차 건강관리 한다.
  - 나. 학생의 정기 건강 검사 후 추후관리를 한다.
  - 다. 학생 행사에 구급약품을 지원한다.
  - 라. 학생의 건강증진요구에 대처한다.
3. 학생실습의 장
  - 가. 지역사회간호학 실습교육을 실시한다.
4. 감염병의 관리
  - 가.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상담
  - 나.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

**제3조(조직)** 지역간호사업소의 소장 1인은 대학보건실장의 업무를 병행하며, 2-3명인 이내의 운영위원 및 상근자를 둔다. 특별 상근자는 필요시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4조(소장 및 운영위원)** 소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은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재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5조(운영 위원회)** ① 지역간호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간호사업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위원회는 지역간호사업소의 소장 및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1. 사업계획, 예산에 관한 사항

	<b>지역간호사업소 운영 규정</b>	문서번호	4-1-1		
		제정일	2001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2/3	관리 부서	지역간호 사업소

- 2.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지역간호사업소 및 대학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
- ② 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6조(개정)** ① 지역간호사업소의 운영경비는 교내보조금으로 한다.

- ② 지역간호사업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7조(사업 계획 및 예산서)** ① 소장은 지역간호사업소의 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 연도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②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8조(사업 보고 및 결산서)** 소장은 지역간호사업소의 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보고,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 연도 개시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단, 교명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<h2>지역간호사업소 운영 규정</h2>	문서번호	4-1-1		
		제정일	2001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지역간호 사업소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